www.i-sh.co.kr

청렴 청신호, 부패 적신호

만리동 예술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잔여세대]

만리동 예술인주택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며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을 원하는 신청예정자는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신청기재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나 서류미제출로 인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협동조합형 주택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을 구성해 건설단계부터 조합원의 욕구와 개성을 실제 설계에 반영하고 입주자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주거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

21496161949873G

□ 협동조합형 주택의 특징

○ 공통의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형 주택으로 조합원 주거커뮤니티 강조

○ 조합원의 커뮤니티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고, 주택의 유지 및 운영을 조합구성원이 직접하며 자율적인 주거공동체를 형성

○ 협동조합형 주택의 조합원으로서 조합 가입 및 의무이행에 동의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협조해야 함.

1 공급개요

■ 주택개요

○ 소재지: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27길 69(만리동2가 218-105)

주택 유형	전용면적(㎡)	공급호수	세대별 계약면적(㎡)				주택 구조	비고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22형 (1인가구형)	22.18	1호	45.62	22.18	11.53	11.91	철근 콘크리트	잔여세대 공급
45형 (2인가구형)	45.00	2호	90.54	45.00	21.37	24.17		
	45.77	1호	91.03	45.77	20.67	24.59		

※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공용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입주자 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공급대상 및 임대가격

주택 유형	동	호	전용면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22형(1인가구형)	2	207	22.18	35,488,000	15,000
45형(2인가구형)	1	301	45.00	72,000,000	24,000
45형(2인가구형)	1	401	45.00	72,000,000	24,000
45형(2인가구형)	3	103	45.77	73,232,000	24,000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입니다.

214961619498736

○ 금회 모집세대는 모두 잔여세대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이며, 예비자 선정의 경우 해당유형의 잔여세대 발생 시 공급됩니다.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못한 별도의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공항, 철도,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개 기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주택 내·외부환경(생활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조합규약 및 조합원가입에 동의하셔야 하며 조합운영 및 커뮤니티실 운영에 대한 별도의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입니다.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임대금액 전환안내

주택 유형 (㎡)	동	호	기준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22형 (1인)	2	207	35,488	15,000	+	37,090	6,000
					-	14,190	59,300
45형 (2인)	1	301	72,000	24,000	+	74,570	9,600
	1	401			-	28,800	114,000
45형 (2인)	3	103	73,232	24000	+	75,810	9,600
					-	29,290	115,500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임. (전환한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임.(전환한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임대기간

○ 최초 계약 기간: 2년

(입주자격 및 조합원 의무이행을 유지하는 경우 재계약가능, 최장 20년)

2 입주 자격

214961619498736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04.27.)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만19세 이상인 자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2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막큡) 조합원의 가입 및 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자

문화예술분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구 분	신 청 자	자 격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세대구성원이 1인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을 경우 2인가구로 인정되어 22형 신청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 가구	본인 및 자녀(태아)를 포함해 2인 이상 세대원으로 구성된 가구

■ 신청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 을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비 고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 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있지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214961619498736

※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세부기준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th></tr>
<tr><td colspan="2">소득</td><td>(단위: 원)
<table>
<tr><th>구 분</th><th>1인 가구</th><th>2인 가구</th><th>3인 가구</th><th>4인 가구</th><th>5인 가구</th><th>6인 가구</th></tr>
<tr><td>소득 50% 이하</td><td>1,495,816</td><td>2,281,268</td><td>3,120,260</td><td>3,547,103</td><td>3,547,103</td><td>3,696,824</td></tr>
<tr><td>소득 70% 이하</td><td>2,094,142</td><td>3,193,775</td><td>4,368,364</td><td>4,965,944</td><td>4,965,944</td><td>5,175,553</td></tr>
<tr><td>소득 100% 이하</td><td>2,991,631</td><td>4,562,535</td><td>6,240,520</td><td>7,094,205</td><td>7,094,205</td><td>7,393,647</td></tr>
</table>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별로 월평균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함.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거주불명등록 등)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td></tr>
<tr><td rowspan="2">자산</td><td>부동산 가액</td><td>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가액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상세설명은 〔붙임〕참조</td></tr>
<tr><td>자동차 가액</td><td>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상세설명은 〔붙임〕참조</td></tr>
</table>

■ 입주자격 검증 및 소득·자산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입주자격 검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조회해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
소득 · 자산 확인방법	소득 ·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로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3 입주대상자 선정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2021.04.27.(화) ※ 공사 홈페이지
주택 사전 공개	2021.05.04.(화) ~ 2021.05.07.(금) ※ 공휴일(2021.05.05.) 제외 ※ 관할센터(성동중구센터)와 연락 (02)6909-9300~1
신청 접수	2021.05.10.(월) 10:00 ~ 2021.05.12.(수) 17:00 ※ 인터넷 청약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1.05.18.(화) (공사 홈페이지 게시) ※ 공급대상 가구 수의 5배수 선정
심사서류 제출기간	2021.05.26.(수) ~ 2021.05.28.(금)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1
소명대상자 발표	2021.07.07.(수) ☞ 소명대상자는 별도 통보
소명서류 제출	2021.07.09.(금) ~ 2021.07.15.(목) ※ 등기우편은 2021.07.15.도착분까지 인정 ※ 증빙서류 및 소득심사사항에 대하여 보완 제출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2021.07.20.(화) (공사 홈페이지 게시) ※ 2차 심사 후 공급대상 가구 수의 3배수 선정
교육 및 평가	2021.07월~08월 중 (8회차) ※ 입주자로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인터뷰
최종입주대상자 발표	2021.08.30.(월) (공사 홈페이지 게시) ※ 4차 심사(인터뷰)로 최종 입주자 선정
당첨자 주택 공개	2021.09.06.(월) ~ 2021.09.08.(수) ※ 관할센터(성동중구센터)와 연락
계약	2021.09.13.(월) ~ 2021.09.15.(수)

※ 입주예정기간: 2021.09.29.(수)~2021.11.29.(월)

※ 위의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 평가 방법

<table>
<tr><th>구 분</th><th>평가 방법</th></tr>
<tr><td>1차
(객관적 평가)</td><td>■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고득점 순으로 공급세대의 5배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대해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배점</th><th>합계</th></tr>
<tr><td rowspan="3">월평균 소득</td><td>50% 이하</td><td>35</td><td rowspan="8">100</td></tr>
<tr><td>50% 초과~70% 이하</td><td>30</td></tr>
<tr><td>70% 초과~100% 이하</td><td>25</td></tr>
<tr><td rowspan="3">서울시 거주기간</td><td>5년 이상</td><td>35</td></tr>
<tr><td>3년 이상~5년 미만</td><td>30</td></tr>
<tr><td>3년 미만</td><td>25</td></tr>
<tr><td rowspan="3">무주택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td><td>5년 이상</td><td>30</td></tr>
<tr><td>3년 이상~5년 미만</td><td>25</td></tr>
<tr><td>3년 미만</td><td>20</td></tr>
</table>
※ 동일점수 경합시 ①월평균소득, ②서울시 거주기간, ③무주택기간의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정</td></tr>
<tr><td>2차
(주관적 평가)</td><td>■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명단(5배수)을 기준으로 주관적 평가 실시
<table>
<tr><th>평가항목</th><th>배점</th><th>합계</th></tr>
<tr><td>입주지원서 평가</td><td>50</td><td rowspan="2">100</td></tr>
<tr><td>작품 활동에 대한 평가</td><td>50</td></tr>
</table></td></tr>
<tr><td>3차
(조합교육)</td><td>■ 공급세대의 3배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교육 실시
총 8회차 교육 실시(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단)</td></tr>
<tr><td>4차
(조합인터뷰)</td><td>■ 조합교육 8회차 중 5회차 이상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터뷰 실시
<table>
<tr><th>평가항목</th><th>배점</th><th>합계</th></tr>
<tr><td>성실성</td><td>5</td><td rowspan="4">20</td></tr>
<tr><td>참여의지, 적극성</td><td>5</td></tr>
<tr><td>공동체적응성, 협동성</td><td>5</td></tr>
<tr><td>발전가능성, 지속성</td><td>5</td></tr>
</table></td></tr>
</table>

※ 총 교육회차와 조합인터뷰 실시 최소 회차는 조합단과의 협의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기준

○ 차수별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하되, 3차 심사(교육)대상자는 1차, 2차 점수 합산해 선정

○ 3차 조합교육 총 8회차 중 5회차 이상 이수한 경우 4차 조합인터뷰 대상으로 선정

5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 **주택 사전 공개:** 2021.05.04.(화) ~ 2021.05.07.(금) 10:00~17:00

※ 공휴일(2021.05.05.) 제외

○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동중구센터 ☎(02)6900-9300~1

■ **신청접수 일정:** 2021.05.10.(월) 10:00 ~ 2021.05.12.(수) 17:00

■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아래, 8. 인터넷 신청안내 참고)**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1.05.18.(화) 17:00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서류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안내문 등 등기우편 발송 예정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5배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대해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필요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확인하기 위해 아래서류 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에서 탈락됩니다.

■ **심사서류 제출기간:** 2021.05.26.(수) ~ 2021.05.28.(금)

■ **심사서류 제출방법**

방 법		보낼 주소
이메일 발송 시 제목은 반드시 "만리동예술인주택_심사서류_성명_날짜"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택1)	• 방문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 ※ 교통편: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방문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만리동예술인주택 담당자 앞(06336) ※ 구비서류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21.05.28.도착분까지 유효)
	• 이메일	coop-housing@i-sh.co.kr로 서류 스캔 후 첨부파일 제출 (2021.05.28. 18:00까지)

■ **제출서류**(※ 반드시 "신청자 기준"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입주지원서〔별지 1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증명서상 유효기간이 모집공고일 현재 및 계약체결 후 입주 시까지 유효할 것

○ 작품 포트폴리오(파워포인트 양식 별도 첨부)〔별지 2호〕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등본 분리 시 분리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반드시 주민등록 뒷자리가 포함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반드시 주민등록 뒷자리가 포함된 ***상세*증명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주민등록 뒷자리가 포함된 ***상세*증명서**로 발급)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3호〕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가 있는 신청자만 해당되며,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임신진단서(신청자 중 해당자만 제출)

※ 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며, 입주자격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제출 불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신청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소명대상자 발표: 2021.07.07.(수)

○ 증빙서류 추가 제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별도 통지

■ 소명서류 제출: 2021.07.09.(금) ~ 2021.07.15.(목)

○ 대상서류: 소득 증빙서류,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작품 포트폴리오

○ 제출방법: 위 신청서류 제출방법과 동일

214951619498736

6 예비입주자 및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발표: 2021.07.20.(화)

○ 신청유형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1,2차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공급호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해 조합에서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실시합니다.(3차 심사)

※ 총 8회차 교육 실시(교육내용 및 일정 별도 통보)

○ 예비입주자 중 5회차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4차 심사(인터뷰)를 실시합니다.

■ **당첨자(예비자 포함) 발표:** 2021.08.30.(월) (공사 홈페이지 게시)

○ 4차 심사(인터뷰) 고득점순으로 공급세대의 1배수를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4차 심사(인터뷰) 당첨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예비자로 선정됩니다.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타입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 합니다.**

○ 배정된 동호는 입주자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예비자 순번에 의해 공급합니다.

○ 예비자 효력은 대상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유효합니다.(2022.08.29.까지)

7 계약 및 입주안내

■ **당첨자 주택 공개:** 2021.09.06.(월) ~ 2021.09.08.(수) 10:00~17:00

○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동중구센터 ☎(02)6900-9300~1

■ **계약:** 2021.09.13.(월) ~ 2021.09.15.(수) (최종대상자 별도 공지)

■ **계약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

※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입주예정기간:** 2021.09.29.(수)~2021.11.29.(월)

※ 입주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대상자에게 계약안내문 등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입주 및 주택 공개 관련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동중구센터

○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동중구센터 ☎(02)6900-9300~1

214961619498736

■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②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③ 신청인 도장(본인 내방시 서명가능)
대리인 계약시	▶ 직계가족인 경우: 본인계약시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본인계약시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본) 및 인감도장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

8 인터넷 신청안내

"인터넷 청약, 10분에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마감시간 내)"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등), 서울시(자치구) 거주기간 등〕 서류심사 시 **해당점수가 차감**되거나 **신청자격 결격**처리 되오니 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가급적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한 후 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는 보다나은 청약신청 환경을 제공 위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신청기간 전에 개발이 완료될 경우 신청방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신청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해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공인인증서 발급/소지, 도로명 주소 숙지

※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

4. 입주자선정방법-평가방법 1차 심사 항목 참고

월평균 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 신청순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 인터넷청약 → 공인인증서 로그인 → 1단계(공고 선택) → 2단계(단지 선택) → 3단계(신청자격 확인) → 4단계(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5단계(신청사항 입력) → 6단계(공인인증서 확인) →7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3149616194887 36

■ 신청 시간

신청 기간은 2021.05.10.(월) 10:00 ~ 2021.05.12.(수) 17:00이며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해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해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을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합니다.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해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분양권등,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준공후 등기처리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되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9. 매매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10.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0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해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해당주택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총자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해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합니다.(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여부는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예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에 의합니다.
신청서류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보의 전산자료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무주택), 세대구성원수, 부동산 및 차량소유, 소득입증, 심사서류 및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선정기준과 관련해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되며, 이와 관련해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임대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우편(계약안내문 등) 미수령으로 인한 미계약의 경우 본인과실로 인해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시 기재한 사항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입주 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반납해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유선(전화)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선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4961619498736

구분	유의사항
기타 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예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예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사회보장정보(범정부)시스템에 의한 조사확인 절차상 이의신청기간 내 소득자료의 미제출 등 소명이 불가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눔카 관련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 및 주차난 해소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일부(1면~2면)를 나눔카(카셰어링) 사업에 제공하여 추진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 관련	•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214961619498736

11 문의 전화

신청접수 및 입주자선정	콜센터 ☎1600-3456 맞춤주택부 ☎02)3410-8564,8546
입주 및 현장확인(주택 공개)	성동중구센터 ☎02)6900-9300~1

12 위치 및 입지여건 안내

■ 위 치 도

■ 입지여건

214961619498736

대중교통	2호선 아현역 3번출구,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03번 탑승, 제일생고기정육점 앞 하차 서울역 서부역 방면으로 나와 롯데마트 입구방향, 마을버스 용산 04번 탑승, 만리동 시장에서 하차
입주여건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한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임. 만리배수지공원, 손기정체육공원 인접

2021. 04. 27.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붙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물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해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함.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14961619498736

구분		산정방법
총자산	일반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2149616198736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214961619498736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 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기타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 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해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SH 서울주택도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

214961619498736